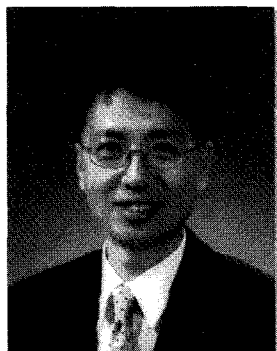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정부내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필요성 논의를 중심으로



김진국
건양대학교 사이버경제무역학부 교수

**규제개혁의 결과로
경쟁이 확대된 분야에서
시장원리가 철저히 작동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쟁주창 기관인 공정위의
전문성을 갖춘 의견 및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공조 및 보완체제를
현재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내에
정착시킨다면 규제의 질을 높이고,
규제개혁 원래의 취지와 부합할 것이다.**

1. 경쟁정책과 규제개혁과의 연계의 이론적 당위

1) 개발시대의 규제양산의 배경

우리 나라의 각종 규제는 과거 개발연대시 특히,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기업 및 일반 조직의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정보량 및 정보획득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정부가 경제, 사회 각 부문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편의와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형성된 경우가 많음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60~70년대에 정부는 압축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나 80년대 들어와 이러한 정부규제들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다기화된 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주체인 기업 및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조직체에게도 오히려 운영비용을 점증시켜 사회전체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배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들 각종 규제는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유지도구로도 사용되어 왔으며, 이들은 기존의 규제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경향마저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산업정책적 기반 위에 경제계획으로 이루고자 하였던 시기에 제정되었던 각종 경제·사회규제들은 다음 단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효율성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하겠다.

2) 경쟁정책적 관점에서의 규제개혁 필요성

새로운 경제사회에 필요한 규제개혁의 철학적 기반을 종래의 산업정책적 혹은 목표달성을 위한 사전규제방식을 통한 경제발전정책이 아닌 시장의 자율성에 근거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경쟁정책에 기반을 둘 때 창의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까지는 수입경쟁으로부터 보호된 내수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나 90년대 들어 급속히 진행되어 온 세계화는 개방된 시장 하에서의 경쟁력을 요구하는 바, 종래의 보호된 시장하에서의 사전규제방식에 의한 경쟁력 확보는, 지금과 같은 개방경제하에서는 오히려 기업에게 운영비용 및 각종 행정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고비용 구조를 낳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초를 두고 급속히 진행되어 가는 세계화는 대량생산체제하의 단순한 저비용 우선 및 제품개발의 경제 패러다임을 뒤엎고 개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의 소프트화가 경쟁력 강화 및 창출에 주요 요소로 작용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사전규제적인 행정, 사회 경제규제는 시장기능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최근의 일본 경제나 한국경제가 겪는 어려움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상황의 변화는 규제개혁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큰 요

인이라 하겠다.

경쟁법·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촉진함으로써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들을 찾아가도록 가격기구의 역할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과거 개발연대의 규제습관에 젖어 있는 행정당국으로서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무엇인가는 시장에 손을 대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당국에게 1998년 한 해 동안의 규제총수의 절반을 철폐한 성과를 넘어서 시장경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이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한 규제개혁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1998년 이후 진행되어 온 규제개혁은 각종 불필요하고 경제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수를 대폭 줄임으로 해서 정부와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였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초 위에 시장의 작동에 대한 믿음을 갖고 경쟁정책에 기반을 두어 각종 진입규제, 가격규제 및 여타 경제규제를 철폐, 완화 내지는 더 나은 질의 규제로 개혁하여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경쟁정책의 목표와 규제개혁 목표와의 부합성

먼저 경쟁정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규제개혁 목표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표방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기본목표는 첫째, 현존하는 규제의 존재여부를 원점(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국내사업자 혹은 외국사업자와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경제활동 관련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반면 환경, 안전, 보건 등 국민 전체의 공익과 관련하여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

제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고, 둘째,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신설 및 강화를 강력히 억제하고 규제 총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기업활동의 자유화 및 국가경쟁력 수준을 세계 10위권대로 향상시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본목표를 따를 때, 규제개혁은 궁극적으로 민간의 자율·창의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 국민경제의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하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핵심원리는 경쟁촉진이며 이는 곧 경쟁정책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즉, 효율적 규제(관리)를 도입하여 경제행위의 왜곡을 줄이도록 함에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근본 철학을 경쟁촉진에 두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으며, 그 접근방법도 시장지향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특정 부문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규제의 직접적 효과는 보다 높은 생산비용, 이에 따른 높은 시장 가격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그리고 제품 기술 혁신의 미흡 및 낮은 서비스 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OECD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규제개혁은 분석대상부분의 노동 및 자본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¹⁾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수립·시행·감독 및 사후평가 등 전단계를 하나의 원칙하에서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규제개혁으로 인하여 각종 진입규제가 제거

되고, 가격규제 및 행정규제의 철폐 및 완화는 결과적으로 경쟁을 촉진시켜, 제품에 대한 기술혁신 동기가 고양되어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규제개혁의 결과로 경쟁이 확대된 분야에서 시장원리가 철저히 작동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공조체계 구축 방안

1) 규제개혁, 경쟁정책 및 소비자후생

OECD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경쟁정책의 기초 위에 근거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²⁾ 즉, 경쟁촉진은 규제개혁을 용이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경쟁 이슈가 적절히 제기되지 않는다면 개혁 노력은 잠재적인 이득을 얻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예로서, 몇몇 국가에서 규제개혁이 실패한 원인이 매우 중요한 이행시기에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 내지는 방법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데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쟁당국은 규제개혁 과정에서 경쟁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경쟁주창 역할자임을 상기할 때, 집행 및 분석과정에서 경쟁당국이 행하는 많은 작업들은 규제개혁작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서 요구되는 숙련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쟁당국들과 아울러 소비자보호 당국도 친경쟁적 규제

1) 규제개혁이 GDP에 미치는 효과는 일본, 독일, 프랑스의 경우 각각 5.6%, 4.9%, 4.8%에 이르며,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도 일본의 경우 각각 2.6%와 4.3%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행위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고려해 볼 때,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은 일본보다 오히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OECD, "The Economy-wide of Regulatory Reform" (<http://www.oecd.org/subject/economy.htm>) 참조 바람.

2) OECD, "Competition, Consumers, and Regulatory Reform", (<http://www.oecd.org/subject/regreform/competition.htm>) 참조.

개혁에 있어서 상당 부분 경험을 축적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갖는 규제개혁의 최종지향점은 어느 특정 부문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경쟁적인 산업이 일반적인 경쟁법에 의해 규제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진행이 이루어지면 결국 표준화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쟁법으로 전산업을 규제하게 될 것임과 아울러 이러한 논점은 결국 규제개혁에 있어서 경쟁법 및 경쟁정책이 규제개혁의 기본 철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추진전략으로서 정부는 경쟁정책의 범위와 효과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즉, 경쟁법 및 경쟁당국의 범위와 그것이 미치는 효과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쟁당국은 각 행정부처 내에서의 규제개혁을 위한 경쟁주창의 권위와 역량을 충분히 가져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하겠다. 경쟁촉진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간다고 할 때 경쟁당국은 규제개혁을 더욱 지원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소비자보호와 다른 정책목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상당부분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복잡한 구조의 규제, 규제의 투명성 결여 등이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각종 제도적 규제 및 사업자단체 등의 비공식적인 규제 등으로 인해 수입상품의 시장접근이 제약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일본은 규제개혁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개방이라기보다는 선별적인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규제개혁의 목표를 소비자후생 극대화에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은 규제개혁의 목표를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두고 시장을 개방하고 있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일본이 훨씬 높은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증거라 하겠다. 일본은 종래 통산성이나 대장성 등을 통해 이루어진 시장관리시스템을 관리된 규제완화로 바꾸어 규제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시키는데는 실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규제개혁 과정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규제개혁 집행이 경쟁정책에 바탕을 두고 소비자후생 극대화에 목표를 두었을 때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창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2) 경쟁정책적 입장에서 본 규제개혁 집행의 개선 방향

현재까지는 규제개혁을 위한 논리적 기반이 사실상 규제철폐로 인한 기업의 시장 진입 및 영업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부와 기업간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데에는 일조하였으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부문에서는 많은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규제개혁 철학적 기반이 시장경제의 창달에 있으나, 그 동안의 규제개혁은 다분히 행정개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규제 전수를 절반으로 줄인 혁명적인 작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들이 상존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경쟁정책에 기초하여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를 보다 과감하게 철폐 완화함과 동시에 둘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야만 시장경제원리의 창달

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공기업과 민영화 기업 및 산업부문에 대한 경쟁정책 도입과 규제의 범위를 결정하여 독점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남용뿐만 아니라 민영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경쟁주창과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문제점

경쟁주창³⁾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및 규제개혁과정에 경쟁의 원칙 및 시장경제적 수단의 활용을 증진하려는 일체의 노력을 의미한다. 즉, 경쟁주창은 공기업 또는 민영화대상 기업을 보다 경쟁촉진적인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든지 일반산업 부문에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제적 규제를 찾아내서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일이 포함되며, 사회적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경쟁주창의 효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그에 적합한 권한과 자원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정부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의적절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정의해 본 경쟁주창에 의할 때 현재 우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규제개혁과정은 경쟁주창자의 입장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된 기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진다. 규제개혁에 있어서 경쟁주창이 이론적 기반이 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개혁 추진과정에서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개혁대상으로 바뀐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경쟁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배제된 현재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시장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주창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춘 의견 및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공조 및 보완체제를 현재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내에 정착시킨다면, 규제의 질을 높이고, 정부규제를 시장기능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원래의 취지와 부합할 것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경쟁제한적 규제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행정규제, 사회적 규제 및 경제 규제를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래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는 공정거래위원회 본래의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경쟁촉진이나 시장기능의 확대를 제도적·원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80년대부터 경쟁제한적인 각종 정부규제를 철폐·개혁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온 바, 현재는 규제개혁

3) OECD에서는 많은 보고서에서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경쟁주창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보고서들을 참조하기 바람. OECD, "Overview of OECD Work on Regulatory Reform", (<http://www.oecd.org/subject/regreform/index.htm>); ____, "International Market Openness and Regulatory Reform", (<http://www.oecd.org/subject/regreform/market.htm>); ____, "Competition, Consumers, and Regulatory Reform", (<http://www.oecd.org/subject/regreform/market.htm>); ____, "Competition, Consumers, and Regulatory Reform", (<http://www.oecd.org/subject/regreform/cmpetition.htm>); ____, "The Economy-Wide Effects of Regulatory Reform", (<http://www.oecd.org/subject/regreform/economy/htm>); ____, "Regulatory Reform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http://www.oecd.org/subject/regreform/innovation.htm>).

이 경쟁촉진 및 시장기능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하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행정부처와는 달리 특정산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경제전반에 걸친 규제영향 분석이 가능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겠다.

특히, '97년 4월에는 경쟁촉진을 본령으로 하고 특정산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내의 결정으로 경제규제개혁의 총괄직업이 재정경제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경제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하여 각종 경제규제를 개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97년 상반기에는 공장입지, 진입장벽, 물류·유통, 자금조달, 건축, 사업자단체 등과 관련하여 개혁이 시급한 우선추진과제(9개 분야 31 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시행하였고 '97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자나 국민불편과 관련 민생과제와 산업입지, 정보통신, 유통·항공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하였다.

'98년 3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된 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야의 규제개혁에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면서, 해운·항만, 건설, 주류, 환경, 전문자격사, 수출입관련규제, 품질인증제도 등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확정하거나 관계기관 및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규제개혁작업단」의 존속기간이 '98년말로 만료되고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행했던 경제규제개혁작업을 이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괄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지원하는 관계로 변화되어 그 동안 쌓아온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선방향 :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조체계 구축

OECD에서 권고하는 규제개혁의 목표나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개혁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시장의 효율성 증대, 기술혁신 증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 촉진 등에 있음을 주지할 때 이러한 목표들은 경쟁정책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규제개혁에 있어서는 경쟁촉진이 기본 방향으로 역할할 수 있음을 인식함과 아울러 경쟁주창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과거 산업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할 때 입안하였던 각종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 등의 규제 사항들이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어 가는 국경없는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더 이상 산업정책적 마인드의 정부개입정책 우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점점 떨어뜨리고 오히려 정부의 실패 범위만 늘리는 형상임을 80년대 중반 이후 보아 왔다.

'98년에 규제 총량을 비록 절반으로 줄였다고 하지만 행정적 규제의 총량적 감소라고 할 수 없으며, 규제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증진시키는 작업은 경쟁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규제 총량의 감소가 실질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비록 초기에 비해서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들의 시

장기능과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전국민이 생활하기 편안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취지 아래 여러 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대표성 확보에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각 분야의 복잡다기한 규제 문제를 규제기관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규제개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뚜렷한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고 총리실 조정관 산하의 인력으로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절대적인 인력 부족과 더불어 상근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그 동안 전문인력의 부족을 전문가 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여 왔으나, 이들 위원회를 통한 규제 대안의 제시는 이 위원회의 위원회들이 상설 위원회들이 아니어서 비록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기능 유지는 어렵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은, 규제개혁이 지향하고자 하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정책이 규제개혁의 이론적·철학적 기반을 제공하여야 하며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간의 공조체제가 원활히 이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나 이는 매우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작업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대상이 되어 버린 매우 역설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

또한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비록 총리실 산하로 되어 있어서 일견 독립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각 부처의 전문적인 규제 방어 태세에 대응되는 논리 개발을 하기에는 전문인력면에서나 분과위원회의 비상설화의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규제개혁 목표와 경쟁정책 목표간의 보완 내

지는 부합 성격을 갖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규제개혁위원회 출석만으로는 사실상 매우 미흡한 상태라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규제개혁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시 정립하여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경쟁정책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규제 도입의 배경과 근거가 되어 있는 각종 현실 문제를 비규제적 수단과 경쟁촉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공조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호보완적이고 전문적인 공조관계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심사와 규제 사전점검 과정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안고 있는 비상설적인 기구의 한계도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적절하다. 이렇게 될 때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음과 아울러 본래의 규제개혁이 지향하고자 하는 경쟁촉진과 이에 따른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타기관에 비해 규제대상에 포획(capture)될 위험이 적음과 동시에 경쟁주창역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임무 중 하나로서 규제개혁의 목표 수립과 사후감시기능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점이다. 따라서 규제가 완화, 폐지된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부터 시장상황에 대한 전문적 경제분석을 통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공정**